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16. . . (제 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웅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심사장 혼잡에 따른 승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연령을 확대하고, 외국인의 기술창업 활성화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우수한 연구개발인력 유치를 위해 기업투자(D-8) 및 영주(F-5) 체류자격의 취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증발급 업무처리를 위해 '전자비자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전자사증 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전자비자센터가 설치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3.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2호 중 “등록하였을 것”을 “등록하였을 것(다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의 등록을 아니할 수 있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대상이 아닌 7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다만, 7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 제2호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1조의2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96조제1항 중 “법 제9조”를 “법 제7조제1항, 제9조”로 한다.

별표 1 제17호 기업투자(D-8)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학사(국내대학 전문학사를 포함한다)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

별표 1 제28호의3 영주(F-5)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기업투자(D-8) 가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은 법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①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2. ----- ----- ----- 등록하였을 것(다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의 등록을 아니할 수 있다)
3. 법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법 제4조의6 제1항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3. 법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법 제4조의6 제1항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대상이 아닌 7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다만, 7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 제2호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가. 17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을 것	<삭 제>
나. 14세 이상 17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모의 동의를 받아 제2호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6조(권한의 위임)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별 제9조, 제11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30조제1항, 제89조, 제90조 및 제90조의2에 따른 그의 권한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제96조(권한의 위임) ①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연 락 처	02-2110-4116